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5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10.

고 명 욱 의원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시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성과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별표 4에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 또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지원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료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10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고명욱 황국주 남현주  
손범구 서민우 박정환

###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이용 시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등 성과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항목 신설 (안 별표 4)
- 나.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안 별표 4)

###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란 다음에 다음을 신설한다.

달서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전액면제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9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감면율 (할인율)</th>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td> </tr> <tr> <td>(생 략)</td> <td></td> <td></td> </tr> <tr> <td>&lt;신 설&gt;</td> <td></td> <td></td> </tr> <tr> <td>&lt;신 설&gt;</td> <td></td> <td></td> </tr> <tr> <td>(생 략)</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p>[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9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감면율 (할인율)</th>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달서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 면제</td> </tr> <tr> <td>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 면제</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현행과 같음)			달서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전액 면제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현행과 같음)																																											
달서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전액 면제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관계 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